

법률칼럼

[류제모변호사] 상속포기와 한정승인(바람직한 상속포기의 방법)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아 상속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일반적으로 상속포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경우 단순히 상속을 포기하는 것만으로 모든 절차가 종료되는 것일까요? 다른 위험부담은 없는 것일까요?

다음에서 단순히 상속포기만 하였을 경우 발생할 문제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례

갑돌이는 평소 채무가 많던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형제인 을돌이, 병돌이와 함께 3형제가 같이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아버지의 채권자가 갑돌이의 삼촌과 고모를 상대로 아버지의 채무를 이행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삼촌과 고모는 도대체 일처리를 어떻게 했냐며 갑돌이에게 아버지의 채무를 대신 갚으라고 독촉하고 있습니다. 갑돌이 3형제는 상속을 포기하였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2.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피상속인의 채무가 적극재산보다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의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상속포기(상속을 하지 않는 방법)가 있고, 한정승인(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하여야 합니다.

3. 상속순위

한편, 상속인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 및 제1003조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이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가 1순위, 직계존속 및 배우자가 2순위, 형제자매가 3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4순위가 됩니다. 즉, 직계비속 및 배우자가 없거나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2순위자가 상속인이 되고, 2순위 상속인들이 없거나 상속을 포기하면, 3순위 자들이 상속인이 됩니다. 4순위도 마찬가지입니다.

4. 위 사례의 해설

위 사례는 1순위 공동상속권자인 갑돌, 을돌, 병돌의 3형제가 모두 상속을 포기하였고, 2순위인 직계존속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3순위인 갑돌이의 아버지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된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갑돌이의 삼촌과 고모는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서 꼼짝없이 상속채무를 변제해야 할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 결국 상속을 포기한 갑돌이 3형제의 입장에서는 삼촌이나 고모를 대신하여 위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거나 일부를 부담할 수밖에 없어 상속을 포기한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5. 해결책 - 바람직한 상속포기의 방법

이러한 불의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1순위 상속인 중 1인을 선정하여 그로 하여금 한정승인을 하게하고, 그 이외의 나머지 1순위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한정승인을 한 사람이 단독상속인이 되어, 그 한정승인 절차 안에서 상속재산만으로 상속채무를 변제하게 되고, 2순위, 3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상속되지 않으므로 간명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

1. 피상속인의 상속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통하여 상속채무의 상속을 피할 수 있으나, 이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1순위 상속인들이 전부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2순위 또는 3순위(나아가 4순위)상속인들이 상속을 하게 되므로 1순위 상속인들의 단순한 상속포기로는 2순위 이하의 상속인들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3.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서는 1순위 상속인 중 1인으로 하여금 한정승인을 하게 하고, 나머지 1순위 상속인들은 상속을 포기하여 1순위 상속인들의 범위 안에서 상속절차를 끝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